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 - 361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의상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독립유공자 및 의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정책을 서울시 조례와 일원화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의 요금(별표1)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유족증)을 제시한 사람에 대해 주차요금 100분의 80 할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사람에 대해 주차요금 100분의 80 할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주차관리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중구청), 문의전화: 3396-6264, FAX: 3396-8873, 메일: rokaff@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 · 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중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시한 자”를 “제시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중 “소지한 자”를 각각 “제시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유족증)을 제시한 사람

마.「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비 고> 1~6. (생략) 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비 고> 1~6. (생략) 7.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 가. ---------- 제시한 사람 나. ---------- --- 제시한 사람 다. ---------- 제시한 사람

현 행	개 정 안
라. < 신 설 >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유족증)을 제시한 사람
마. < 신 설 >	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사람